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87 발의연월일: 2020. 10. 21.

발 의 자: 권칠승·남인순·박홍근

신정훈 • 위성곤 • 이성만

이소영・이수진(비)・이형석

전용기 · 최종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병역법」 제34조에 따라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. 이들은 「국가공무원법」상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「공무원 징계령」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, 음주운전, 근무지이탈 등 형 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.

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되었을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,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 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(제9조의2 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- 5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의2(신분 상실 및 박탈) ① | 제9조의2(신분 상실 및 박탈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| 2 |
|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| |
| 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 | |
| 을 박탈할 수 있다. 다만, 제1 | |
| 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| |
|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 | |
| 탈하여야 한다. | ,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4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 |
| | 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 |
| | 이 부적당한 경우 |
| <u><신 설></u> | 5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|
| | 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 |
| | 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 |
| | 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|
| |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|
| | <u>경우</u> |